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01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이달희·주호영·최은석

김상훈 • 김기현 • 김정재

서범수 · 정연욱 · 엄태영

김종양ㆍ이인선ㆍ정동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되 시행령 부칙에 한시특례규정을 두어 2024년까지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소방이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등 신종재난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대응·복구 및 예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소방장비 도입, 교육훈련 강화,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한시특례규정의 일몰로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

음.

이에,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대상사업의 시급성 및 대규모 예산투자 필요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교부세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4).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후단 중 "의견을 들어"를 "의견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 ②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는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 1. 소방분야: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2. 안전분야: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3. 다만,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의 비율의 100 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 부) ① ------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 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 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 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의견에 따라-한다. ②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 <신 설> 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 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 분의 25는 소방 인력의 인건비 로 우선 충당하고, 이를 초과 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에 따 라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방분야: 100분의 75에 해 당하는 금액 2. 안전분야: 100분의 15에 해 당하는 금액 3. 다만, 제1호와 제2호에도 불 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의 비 율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 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용, 재단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
<u>다.</u>		
<u>③</u>		
	.	<u><단서</u>
<u>삭제></u>		